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6. 1.

(주)엠엔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8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엠엔티
대표자	최제헌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예스파일 : 약 10만명 / 애플파일 : 약 7천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300억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최제헌 대표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2025.1월)

- (신고·삭제 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발견 시 신고사유, URL 등을 기재하여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로 신고접수 할 경우 담당자 접수 및 신속하게 처리※ 고객센터 / TEL : 1599-9052,4 / E-Mail : webmaster@yesfile.com, applefile@mntcompany.co.kr ※ URL : www.yesfile.com, www.applefile.com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결 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담당자

2025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엠엔티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배너, 고객센터 등에 신고페이지 및 기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컨텐츠 상세페이지의 신고버튼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 가능하도록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페이지 : https://www.yesfile.com/company/#tab=7

·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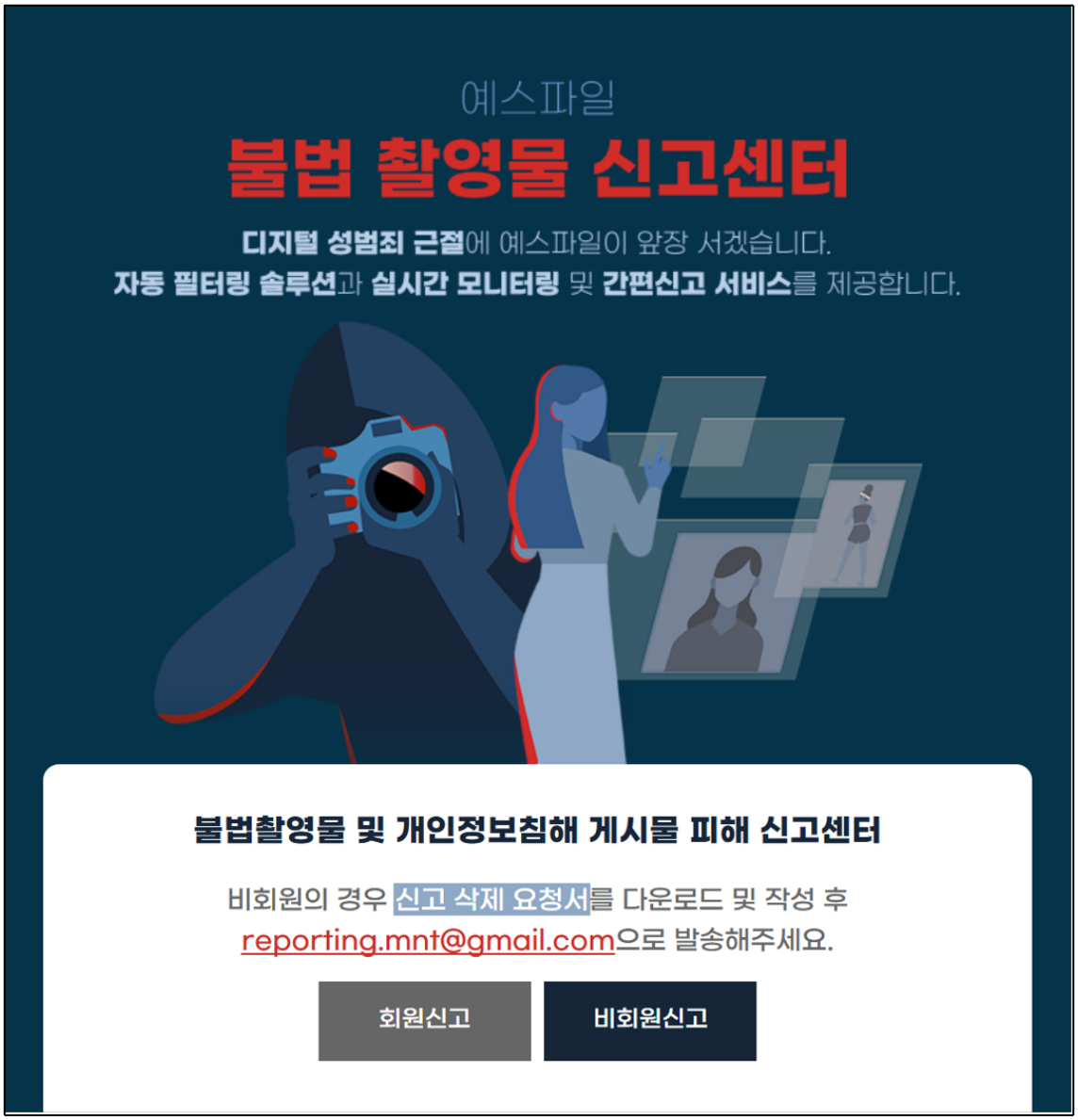

· MOBILE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고객센터(1599-9052,4), 1:1 게시판 및 카카오톡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담이 어려운 경우 메일(reporting.mnt@gmail.com)을 통한 상시 신고 가능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금칙어 설정을 통해 검색 결과 송출 제한 기능 적용

제목	금칙어
불법성인물	조건만남
불법성인물	SM
불법성인물	간통
불법성인물	풀살롱
불법성인물	하드업소
불법성인물	유아
불법성인물	스쿨
불법성인물	화장실도찰
불법성인물	화장실도촬
불법성인물	화 장 실 도 찰
불법성인물	화 장 실 도 촬
불법성인물	화장실몰카
불법성인물	집단강간
불법성인물	성 폭 행
불법성인물	화 장 실 강 간
불법성인물	화 장 실 몰 카
불법성인물	집 단 강 간
불법성인물	화장실성폭행
불법성인물	화장실강간
불법성인물	10대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검색어 노출 제한

·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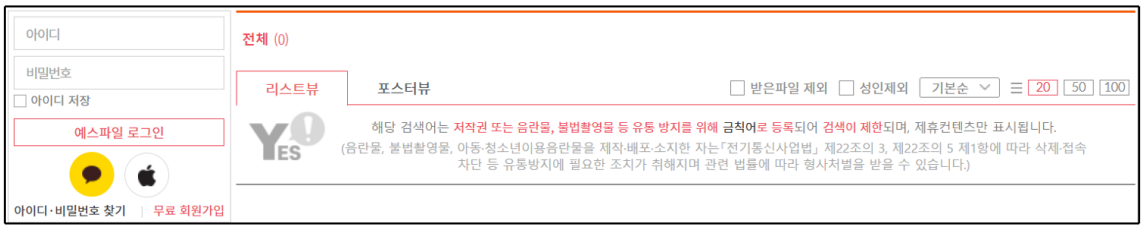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 저장
에스파일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무료 회원가입
전체 (0)
리스트뷰
포스터뷰
받은파일 제외
성인제외
기본순
20
50
100
YES
해당 검색어는 저작권 또는 음란물,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금칙어로 등록되어 검색이 제한되며, 제휴컨텐츠만 표시됩니다.
(음란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 3,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MOBILE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예스파일(PC,MO)	유	IVMS (에스피소프트)	
2	애플파일(PC,MO)	유	IVMS (에스피소프트)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예스파일,애플파일은 동영상 업로드 시 불법촬영물등 게재제한 기술 적용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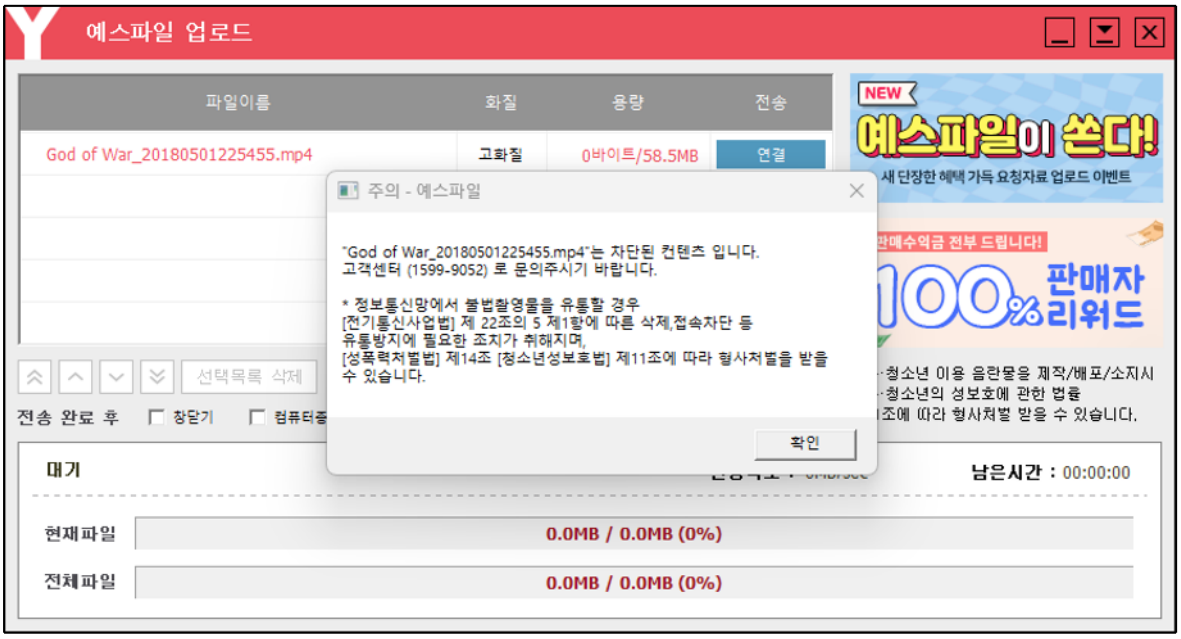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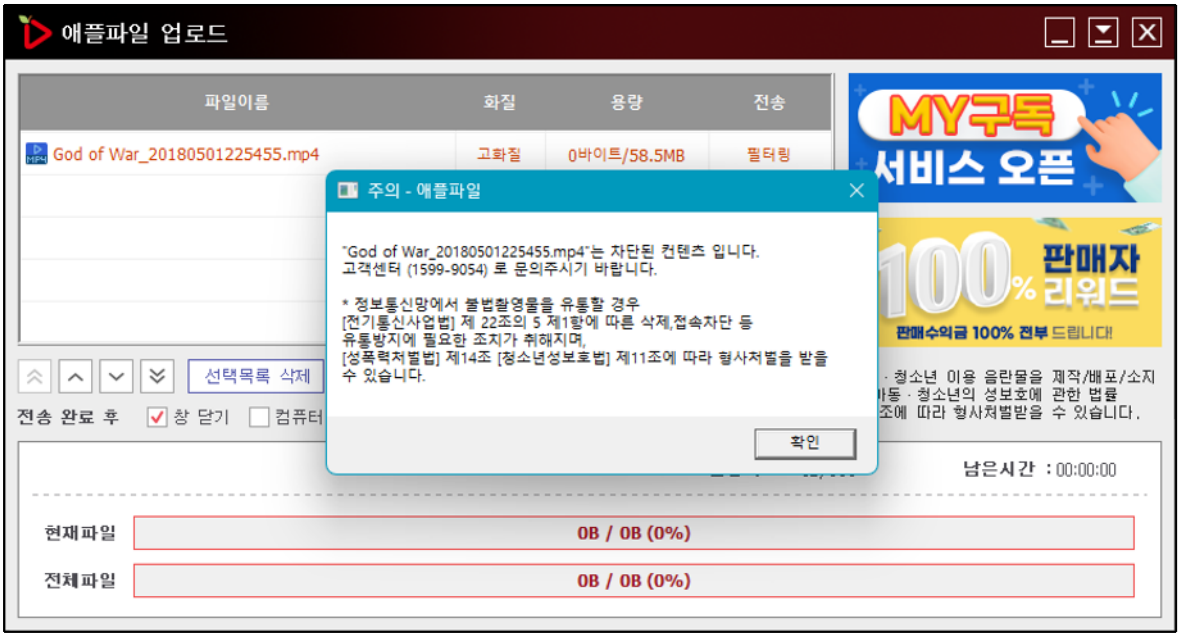

○ 로그기록 보관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 관리하고 있음

·〈로그종류〉

① 신고· 삭제요청 처리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신고일자· 유형 처리결과 등

② 특징기반 필터링 및 게재제한에 포함하여야 할 로그기록 : 파일명, 게시번호, 업로드, 계정/일시/결과 값, 필터링 작동여부, 차단값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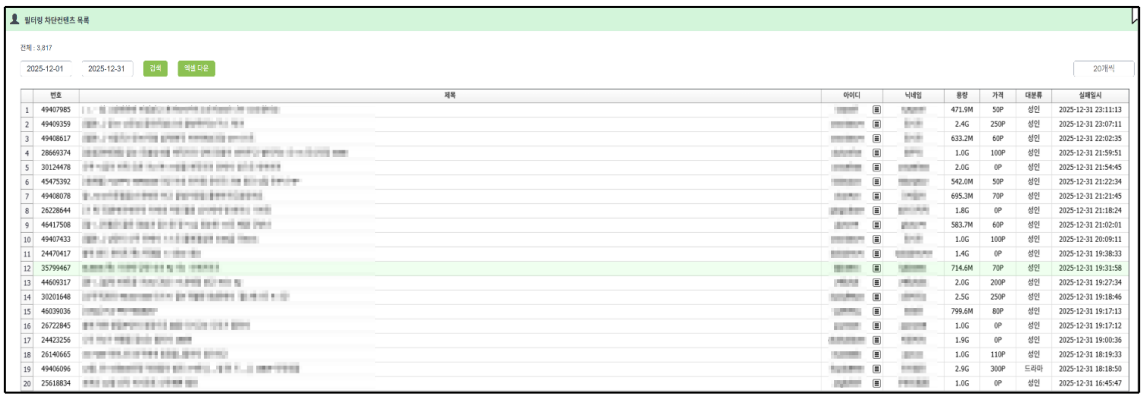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고 포스터 노출을 통한 이용자 경각심 고취

- 홍보 및 캠페인 현황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25. 1. 1. ~ 12. 31. 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 없음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5 .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접수	신고·삭제요청인	피해자등	-	-	-	-	-	-	-	-	-	-	-	-	-
		기관·단체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	-	-	-	-	-	-	-	-	-	-
처리결과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
		각하·해당없음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비고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관련 규정

- https://www.yesfile.com/customer/#tab=7&pn=4&bbs_no=3210534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을 운영,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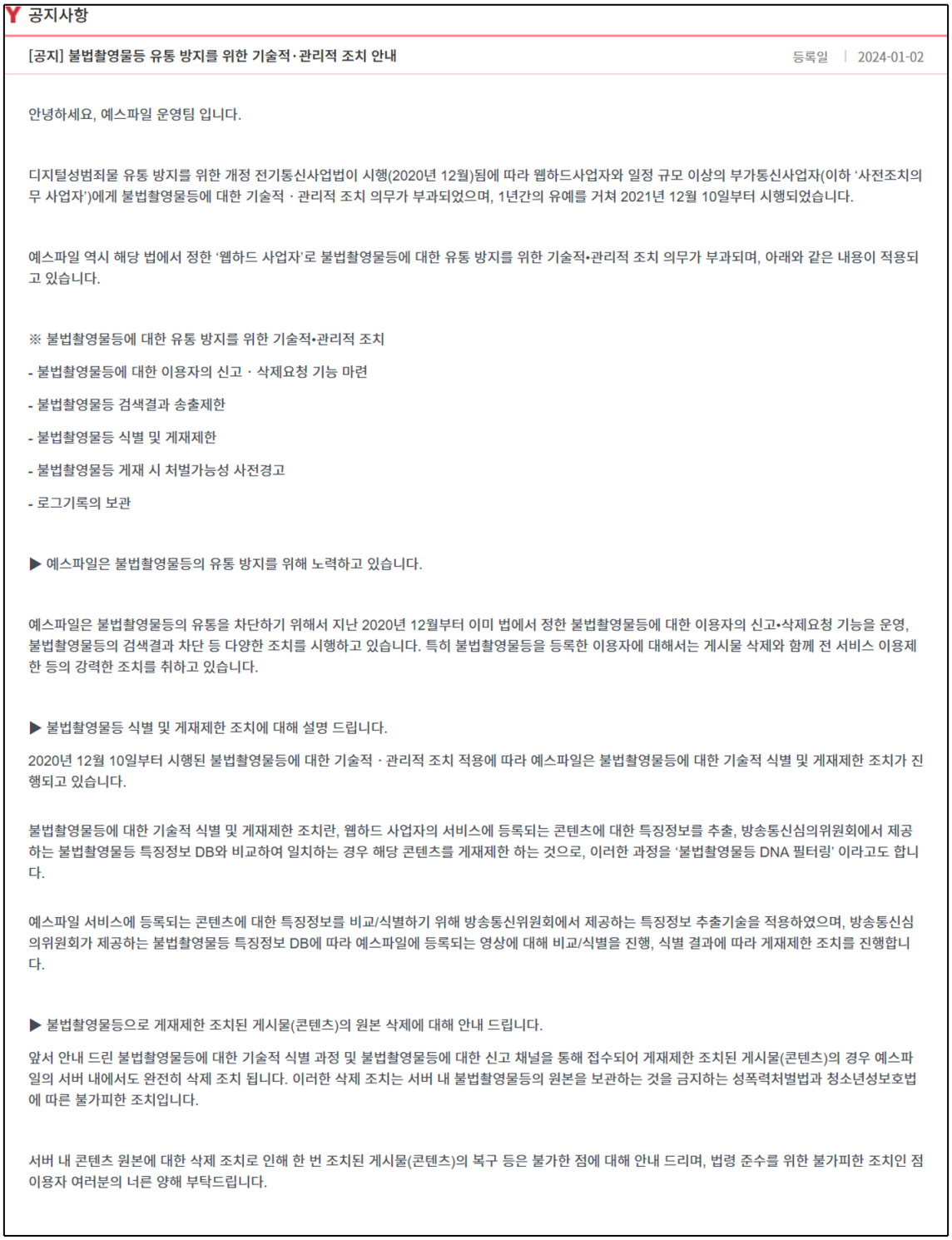

공지사항

[공지]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안내 등록일 | 2024-01-02

안녕하세요, 예스파일 운영팀 입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스파일 역시 해당 법에서 정한 '웹하드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 · 삭제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 로그기록의 보관

▶ 예스파일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스파일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을 운영,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에 따라 예스파일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란, 웹하드 사업자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 이라고도 합니다.

예스파일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정보 추출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따라 예스파일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제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제한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원본 삭제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앞서 안내 드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과정 및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되어 게재제한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경우 예스파일의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 조치 됩니다. 이러한 삭제 조치는 서버 내 불법촬영물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서버 내 콘텐츠 원본에 대한 삭제 조치로 인해 한 번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복구 등은 불가한 점에 대해 안내 드리며, 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 이용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불법촬영물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게시물의 게재제한 조치와 함께 전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스파일 서비스의 제한뿐 아니라 관련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스파일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고　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신고 • 삭제 요청 시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접수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한다.
②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 되면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 경고 문구 발송 및 제재를 진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게시물에 대해 금칙어 설정 및 해시값 차단을 통해 추후 재발을 방지한다.
④ 필터링사에 영상 DNA를 전달한다.
⑤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처리 내용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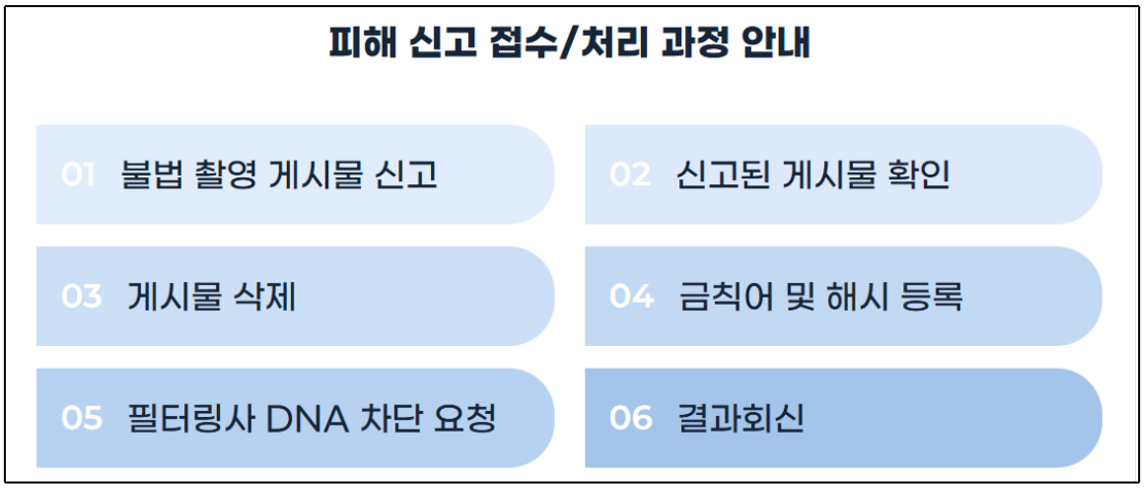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1)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3년이상 보관한다.
3)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지정일
정	최제헌	임원	대표이사	2019-06-03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 육 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법정교육	2025-08-2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최제헌 대표	2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교육	2025-10-23	청소년보호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교육	임직원 전체	1시간	자체교육

〈 교육 증빙 〉

발급번호 : 2025-il-043-0001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최제헌
소　　속 : ㈜엠엔티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5. 08. 25. ~ 2025. 08. 25.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08. 25.

방송통신위원회